

『KB퇴직연금정기예금』 특약

제1조 적용범위

KB퇴직연금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합니다)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퇴직연금감독규정,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취급대상

이 예금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지시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제4조 저축금액

이 예금의 저축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5조 계약기간

- ① 이 예금은 고정금리형, 변동금리형 또는 디폴트옵션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② 고정금리형의 계약기간은 1개월에서 60개월(5년) 이내에서 연, 월, 일로 합니다.
- ③ 변동금리형의 계약기간은 1년이며, 신규 가입할 때 3개월회전 또는 6개월회전 중 1가지를 정하여야 합니다.
- ④ 디폴트옵션형의 계약기간은 36개월에서 60개월 이내에서 연, 월, 일로 합니다.

제6조 만기처리방법

①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1. 고정금리형 중 일 단위 계약은 사용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계약기간이 12개월인 월단위 계약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
2. 고정금리형 중 연, 월단위 계약과 변동금리형은 사용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
3. 재예치 통지를 요청한 고객에 한하여 자동 재예치에 대한 내용을 고객이 지정한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②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또는 개인형(IRP) 퇴직연금

1.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1조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 됩니다.
2. 디폴트옵션형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

제7조 이자

- ① 이 예금의 만기에는 약정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만기이자율, 만기일이 완전히 지난 후 지급일 전날의 기간에 대하여는 만기후이자율로 셈하며, 만기일 이전에 제8조①항의 사유로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이자율, 만기일 이전에 전액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자율로 셈하여 지급합니다. 단, 제8조①항6호 「퇴직연금 수수료 취득을 위한 경우」, 12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의 특별중도해지를 할 때에는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변동금리형은 회전기간별 시작일)에 적용된 이자율(가산금리 포함)로 셈합니다. (신규 또는 재예치후 1개월 미만의 특별중도해지 포함)
- ② 고정금리형, 디풀트옵션형은 해지 사유에 따라 신규일 및 재예치일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자율이 적용되며, 변동금리형은 해지 사유에 따라 매 회전기간 시작일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변동금리형을 만기일 이전에 특별중도해지 또는 중도해지하는 경우 회전기간이 지난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③ 이 예금은 신규 또는 재예치 후 1개월미만에 특별중도해지하거나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의 경과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제8조 특별중도해지

- ① 이 예금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1.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8조 2항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3. 퇴직연금가입자가 기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제도 전환을 위한 가입자 제도전환 또는 가입자이전의 경우
 4. 동일 자산관리기관 내 계약이전하는 경우
 5.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6. 퇴직연금 수수료 취득을 위한 경우
 7. 가입자의 사망
 8.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한 경우
 9.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자의 파산 또는 폐업의 경우
 10.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11. 수탁자의 사임
 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제9조 분할해지

이 예금은 만기(중도)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별로 해지횟수를 산정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지횟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
2. 퇴직급여의 연금형태 지급
3.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

제10조 거래방법

이 예금은 예금주와 은행간에 전문(電文)으로 거래하여, 통장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세제혜택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제12조 예금자보호

①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형(IRP) 퇴직연금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②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3.20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12.2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규정)

제6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까지 자동재예치 됩니다.

본 특약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